

#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- 「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은 2025. 4. 1.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. 4. 1.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-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8,238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, 인명피해 75명, 주택전소 3,265채, 이재민 6,323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.
- 특히 경상북도 안동시 등 관할 5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되어 주택전소 3,239채, 인명피해 59명이 발생하였고, 트랙터 등 농기계 2천여 대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정비와 이재민, 농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손길이 시급한 상황임.
- 서울시는 영남 지역의 피해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비와 농기계, 임시주택 등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,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함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<sup>1)</sup>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# 3. 주요내용

#### [ 수입계획 변경사항 ]
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으로부터 자금을 예수받기 위한 “예수금수입”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액 50억원을 신규 편성함.
- 이에 따라 수입계획을 당초 28억 7천 3백만원에서 78억 7천 3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변 경 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2,873,441	7,873,441	5,000,000	174%
세외수입	100,898	100,898	-	-
경상적세외수입	98,177	98,177	-	-
이자수입	98,177	98,177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98,000	98,000	-	-
기타이자수입	177	177	-	-
임시적세외수입	12,721	12,721	-	-
보조금반환수입	12,721	12,721	-	-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443	2,443	-	-
위탁비반환수입	10,278	10,278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,762,543	7,762,543	5,000,000	181%
보전수입등	1,162,543	1,162,543	-	-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-	-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-	-
내부거래	1,600,000	6,600,000	5,000,000	312%
예탁금 및 예수금	-	5,000,000	5,000,000	신설
예수금수입	-	5,000,000	5,000,000	신설
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-	-

[ 지출계획 변경사항 ]

- 정책사업 “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” 항목의 “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” 사업에 50억원 증액 편성함.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<b>합 계</b>	2,873,441	2,873,441	7,873,441	5,000,000	174%
<b>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</b>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5,060,000	237%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5,060,000	237%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51,600	351,600	351,600	-	-
<b>타 지방자치단체   재해·재난 구호지원</b>	<b>1,000,000</b>	<b>1,000,000</b>	<b>6,000,000</b>	<b>5,000,000</b>	<b>500%</b>
민간경상사업보조	1,000,000	1,000,000	6,000,000	5,000,000	500%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 운영	277,000	277,000	277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35,000	-	-
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	0	60,000	60,000	60,000	순증
<b>재무활동</b>	<b>734,041</b>	<b>674,041</b>	<b>674,041</b>	<b>△60,000</b>	<b>△8%</b>
여유자금 예치	734,041	674,041	674,041	△60,000	△8%
<b>행정운영경비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-	-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27회 정례회) 대비 정책사업비(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) 20% 초과(236.8%) 변경

※ 2025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‘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사업’ 신설 및 여유자금 예치항목 감액 변경(20% 이내 변경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5. 검토 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해 '통합재정안정화기금'에서 50억원을 전출하여 '지역교류협력기금'의 '수입계획'에 반영(예수금수입 항목 신설)하고, '지출계획'에 연동하여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' 사업에 50억원(산불 피해지역 구호 40억원, 예비재원 10억원)을 증액하려는 것임.

### [ 수입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변 경 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2,873,441	7,873,441	5,000,000	174%
세외수입	100,898	100,898	-	-
경상적세외수입	98,177	98,177	-	-
이자수입	98,177	98,177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98,000	98,000	-	-
기타이자수입	177	177	-	-
임시적세외수입	12,721	12,721	-	-
보조금반환수입	12,721	12,721	-	-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443	2,443	-	-
위탁비반환수입	10,278	10,278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,762,543	7,762,543	5,000,000	181%
보전수입등	1,162,543	1,162,543	-	-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-	-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-	-
내부거래	1,600,000	6,600,000	5,000,000	312%
예탁금 및 예수금	-	5,000,000	5,000,000	신설
<b>예수금수입</b>	-	<b>5,000,000</b>	<b>5,000,000</b>	<b>신설</b>
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-	-

[ 지출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2,873,441	2,873,441	7,873,441	5,000,000	174%
<b>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</b>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5,060,000	<b>237%</b>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5,060,000	237%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51,600	351,600	351,600	-	-
<b>  타 지방자치단체   재해·재난 구호지원</b>	<b>1,000,000</b>	<b>1,000,000</b>	<b>6,000,000</b>	<b>5,000,000</b>	<b>500%</b>
민간경상사업보조	1,000,000	1,000,000	6,000,000	5,000,000	500%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 운영	277,000	277,000	277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35,000	-	-
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	0	60,000	60,000	60,000	순증
<b>재무활동</b>	<b>734,041</b>	<b>674,041</b>	<b>674,041</b>	<b>△60,000</b>	<b>△8%</b>
여유자금 예치	734,041	674,041	674,041	△60,000	△8%
<b>행정운영경비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-	-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정책사업비의 ‘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’ 금액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37%(2,136백만원 → 7,196백만원) 증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○ 2025년 3월 영남지역 산불피해는 경북 등 4개 시도에 산불(11개소)로 인해 인명·건물 등 대규모 피해(사상자 75명(사망 30명), 이재민 6,323명)가 발생하였고 특히 경북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< 피해지역 현황 (3.30.(일) 09시 기준) >

- ✓ 시설피해 : 주택전소 3,265채 (경북 3,239채, 경남 23채, 울산 2채, 전북 1채), 기타시설 2,927개소
- ✓ 주민대피 : 3,799세대 (경북 3,473세대 / 경남 317세대), 총 6,323명
- ✓ 인명피해 : 75명 (사망 30, 부상 45) / 경북 59명 (사망 26, 부상 35), 경남 14명 (사망 4, 부상 10), 울산 2명 (부상 2)

- 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

○ 행정국은 지원 항목별로 ① 전소주택 처리 및 기초 인프라 복원 등 복구를 위한 중장비 지원(13억원) ② 경운기, 트랙터 등 농기계 대량 파손에 따른 농번기 농가 지원을 위한 농기계 지원(17억원) ③ 주택 소실로 임시대피소에 수용된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시주택 지원(10억원)을 계획하고 있는 바,

※ 지원방식은 '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'에 기탁하여 적십자사 통해 필요장비 구매, 임차 지원

-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.

〈 지원항목 및 규모 : 3개 항목 40억원 지원 (미사용 10억원 예비재원) 〉

**① 중장비** : 13억원 지원 (임차 방식)

- ▶ 전소 주택(3,239채) 처리, 기초 인프라 복원 등 복구를 위해 중장비 필요
  - 필요장비 : 3종 825대 추정 (백호로더 330대, 덤프트럭 330대, 살수차 165대)
  - 확보방안 : 경북지역 중심 중장비 임대 업체 통해 임차 예정 (주택 피해보상 산정 이후)
    - ※ 일시에 수요가 몰려 임차비용 상승 문제 없도록 지역별 순차적 추진 등 방안 마련

<지원금 산정기준>

- 총 소요예산 : 13억원 추정  
(165개 마을(3,300채)×8백만원(백호 2대, 덤프 2대, 살수차 1대 임차))
- 서울시 지원 : 13억원 ※경상북도 필요 중장비 전체 지원
- ※ 경북도 요청 : 13억원 (165개 마을(3,300채) ×8백만원)



백호로더

**② 농기계** : 17억원 지원 (구매 방식)

- ▶ 경운기, 트랙터, SS기 등 농기계 대량 파손으로 농번기 농가 지원 시급
  - 피해규모 : 안동, 의성, 청송지역 농기계 2,000대 이상 전소, 영양영덕지역 조사중
  - 확보방안 : 산불 피해 5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구매 후 개별 농가 임대 예정

<지원금 산정기준>

- 총 소요예산 : 200억원 추정 (피해규모, 단가 고려)
- 서울시 지원 : 17억원 (농가 수요 우선순위 고려 트랙터, SS기 지원)
- ※ 경북도 요청 : 25억원  
(트랙터 40대 10억원, SS기 35대 7억원, 제초기 50대 7억원, 경운기 20대 1억원)



SS기(농약살포기)

**③ 임시주택** : 10억원 지원 (구매 방식)

- ▶ 주택 소실로 임시대피소에 수용된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지 마련 및 환경조성 절실
  - 피해규모 : 주택 전소 3,239채로 잠정 집계, 세부 조사 후 증가 예상
  - 주거대책 : 임시주택(조립식 주택)으로 1차 입주 후 보다 안정된 주거지로 정착 지원
  - ※ 임시주택 기반시설 설치(최단 1개월 소요) 이후 4월말 설치 가능

<지원금 산정기준>

- 총 소요예산 : 1,069억원 추정 (3,239채 × 구매비 3,300만원)
- 서울시 지원 : 10억원 (우선 입주 규모 고려한 경북 요청액 전액 지원)
- ※ 경북도 요청 : 10억원 (30채 × 구매비 3,300만원)



임시조립주택



※ 기금 전출 관련,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이 일반회계 전출 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(통합계정) 전출을 검토한 결과,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과 통합기금의 운용 목적(회계·기금간 재원의 효율적 활용)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예치금 전출을 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
○ 다만, 2025년 ‘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’ 사업비 예산액 10억원이 전액 소진(제주항공 사고 5억원, 영남 산불피해 5억원)되어 추가로 예비재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,

- ▶ 무안 제주항공 사고 재난구호금 지원 : 5억원 (1.2. 한국재해구호협회 기탁)
- ▶ 영남 산불 피해지역 재난구호금 지원 : 5억원 (3.25.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기탁)

- 2024년 결산 후 집행잔액(8억 2천 2백만원)을 예치금으로 이월하면 이월 후 예치금이 약 15억원(기존 674백만원+822백만원)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비재원 추가 10억원 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※ 2024년 집행잔액 8억 2천 2백만원 중 ‘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’ 사업의 집행잔액이 8억원(불용률 80%)임.

전문위원	정찬일	입법조사관	이태기
------	-----	-------	-----